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업범위에 의료기관 설립 추가 등 〉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40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2209540)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사업범위에 의료기관 설립 추가 등(안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2
가. 검토의견	3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5
1) 국토교통부	5
2) 보건복지부	5
3) 인천광역시	5
4) 인천국제공항공사	6
5) 대한의사협회	6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220954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종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2.
3. 회 부 일 : 2025. 4.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등 주변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업범위에 의료기관 설립 추가 등(안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 9.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10조(사업)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u> 5.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 -----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2(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한다.</u> <u>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을 따른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2024년 4분기 기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및 용유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73개(의원 49, 치과의원 12, 한의원 12)와 보건지소 2개가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각 1개씩을 제외하면 영종국제병원¹⁾이 유일하며, 종합병원은 없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공항 제1, 2터미널에 위치한 인하대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2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나,²⁾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후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나사렛국제병원과 서구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각각 영종대교 또는 인천대교를 따라 30km씩 떨어져 있어,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³⁾

한편, 지난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초기 대응체계 구축과 대형 항공기사고에 대비한 외상응급환자 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고

1) 의사 8명, 병상수 77개, 응급실 없음

2)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인력 규모

제1터미널(2001.3.12.개소): 총 14명(의사 4명, 간호사 5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1명, 행정 2명)

제2터미널(2018.1.9.개소): 총 5명(의사 2명, 간호사 2명, 행정 1명)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094호,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2025.2.12.)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있는 이용객과 종사자, 배후도시 관계사 및 상주인력에 대한 국가필수 의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2항4)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을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의료자원이 열악한 공항 주변 지역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5)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4)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설립 목적은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운영으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이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공사의 사업범위는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사 본연의 업무에 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인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한 경우, 현행법으로도 공사가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유치 가능하나 지난 2012년 국제업무단지(IBC-I) 내 인하국제의료센터를 유치·개원하였으나, 수익성 등으로 운영 중단('20년 6월)한 사례도 있음.

2) 보건복지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공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인천광역시

다른 국제공항(김포공항, 제주공항)과 달리 인천공항은 응급의료 기관 부재로 대형 항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므로, 공항 인근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제적 감염병 확산 및 대형 항공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4)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의 설립목적은 인천공항의 건설, 관리·운영으로 종합병원 관리·운영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는 공항전문기업으로 종합병원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과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도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지난 2012년 인하국제의료센터가 개원('12.10.)하였으나 수익성 등으로 운영을 중단('20.6.)한 바 있음.

5) 대한의사협회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대형 항공사고, 국제적인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사건은 발생 빈도가 낮은 편임을 고려하면 종합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 장비, 인력 등의 확보 비용 대비 설립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긴급환자 등을 이송 및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하므로 「의료법」 내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 등을 확장하면서까지 추가적인 의료기관 개설이 필수적인지 의문이며, 「의료법」

에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근거로 악용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음.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고 발생 시 공항 인근 의료기관 대상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의료시설을 개선·활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며, 의료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가 또는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580